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033220		
등록번호	110111-3689564		
상 호	주식회사 큐라코		2009.07.31 변경 2009.07.31 등기
본 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26, 3층 326호(야탑동, 성남고령 친화종합체육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선택시티2 307호(상대원동)		2016.12.29 변경 2016.12.29 등기
공고방법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uraco.co.kr/index.html)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6.06.28 변경 2016.07.08 등기
1주의 금액	금 1,000 원	
	금 500 원		2019.02.19 변경 2019.02.22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1,550,000 주	금 1,550,000,000 원
보통주식	1,55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	2,026,170 주	금 2,026,170,000 원	2013.11.23 변경 2013.11.25 등기
보통주식	1,550,000 주	
에이종 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발행주식의 총수	2,155,533 주	금 2,155,533,000 원	2013.12.20 변경 2013.12.20 등기
보통주식	1,679,363 주	
에이종 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발행주식의 총수	2,959,103 주	금 2,959,103,000 원	2016.04.02 변경 2016.04.04 등기
보통주식	1,679,363 주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03,570 주		
발행주식의 총수	3,020,456 주	금 3,020,456,000 원	2016.06.29 변경 2016.07.08 등기
보통주식	1,740,716 주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3322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상환전환우선주식	803,570 주	금 3,020,456,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099,028 주		2018.04.17 변경
보통주식	1,740,716 주		2018.04.17 등기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82,142 주	금 3,099,028,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3,399,028 주		2018.11.20 변경
보통주식	2,040,716 주		2018.11.21 등기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476,17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882,142 주	금 3,399,028,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6,798,056 주		2019.02.19 변경
보통주식	4,081,432 주		2019.02.22 등기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952,34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764,284 주	금 3,399,028,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6,798,056 주		2019.04.18 변경
보통주식	4,661,143 주		2019.04.22 등기
에이종상환전환우선주식	952,340 주		
상환전환우선주식	1,184,573 주	금 3,399,028,000 원	
발행주식의 총수	6,798,056 주		2019.04.24 변경
보통주식	6,798,056 주	금 3,399,028,000 원	2019.04.26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7,028,825 주		2019.04.25 변경
보통주식	7,028,825 주	금 3,514,412,500 원	2019.04.26 등기

목 적			
1. 전자기기 제조 및 판매업	<2018.09.17 삭제	2018.10.01	등기>
1. 의료기기, 정수기,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제조 및 판매업	<2018.09.17 삭제	2018.10.01	등기>
1. 수출입업	<2018.09.17 삭제	2018.10.01	등기>
1. 무역업	<2018.09.17 삭제	2018.10.01	등기>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8.09.17 삭제	2018.10.01	등기>
1. 전자기기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전기기기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의료기기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간병로봇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자동대소변처리기기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판매·임대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업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53분00초

등기번호	033220
------	--------

1. 통신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전자상거래 및 관련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정보처리기술에 관한 전문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지식·정보·콘텐츠 등 무형자산의 생산·수집·처리·가공·제공·임대·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전자기기·전기기기·의료기기·간병로봇·자동배설처리기기·헬스케어제품의 설치·유지·보수·관리·안전규격시험 등의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수출 및 수입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무역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유통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부동산 시행·개발·관리·투자·매매 및 임대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컨설팅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교육 서비스업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1.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2018.09.17 추가	2018.10.01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최성필 690215-*****			
사내이사 최성필 690215-*****			
2010년 06월 01일	중임	2010년 06월 01일	등기
2013년 06월 01일	퇴임	2013년 11월 07일	등기
사내이사 이훈상 710922-*****			
2011년 02월 17일	취임	2011년 02월 18일	등기
2014년 02월 17일	퇴임	2015년 04월 14일	등기
대표이사 이훈상 7109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5 삼풍아파트 1-305			
2011년 02월 17일	취임	2011년 02월 18일	등기
대표이사 이훈상 7109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1동 1302호(서초동, 삼풍아파트)			
2013년 03월 06일	주소변경	2013년 12월 26일	등기
2014년 02월 17일	퇴임	2015년 04월 14일	등기
사내이사 이동훈 720315-*****			
2012년 12월 07일	취임	2012년 12월 13일	등기
2015년 12월 07일	퇴임	2015년 12월 31일	등기
감사 김건영 681021-*****			
2012년 12월 07일	취임	2012년 12월 13일	등기
2015년 03월 27일	중임	2015년 04월 14일	등기
2018년 03월 26일	중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사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최성필 690215-*****			
2013년 11월 06일	취임	2013년 11월 07일	등기
2016년 06월 28일	사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병주 780515-*****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033220	
2013년 11월 06일 취임	2013년 11월 07일 등기	
2016년 11월 06일 퇴임	2016년 11월 14일 등기	
대표이사 이훈상 71092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00, 1동 1302호(서초동, 삼풍아파트)		
2015년 03월 27일 취임	2015년 04월 14일 등기	
대표이사 이훈상 710922-*****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로 16, 202동 1704호(태전동, 이편한세상태전2차)		
2018년 01월 05일 주소변경	2018년 01월 12일 등기	
2018년 03월 27일 중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이훈상 710922-*****		
2015년 03월 27일 취임	2015년 04월 14일 등기	
2018년 03월 27일 중임	2018년 04월 06일 등기	
사내이사 이동훈 720315-*****		
2015년 12월 18일 취임	2015년 12월 31일 등기	
2018년 12월 18일 퇴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사내이사 이호상 681030-*****		
2016년 03월 17일 취임	2016년 03월 22일 등기	
2019년 03월 29일 중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유태원 690321-*****		
2016년 06월 28일 취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8년 08월 07일 사임	2018년 08월 17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김준일 750221-*****		
2016년 06월 28일 취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8년 08월 07일 사임	2018년 08월 17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박찬익 780212-*****		
2016년 06월 28일 취임	2016년 07월 08일 등기	
2017년 03월 31일 사임	2017년 04월 12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이병주 780515-*****		
2016년 11월 08일 취임	2016년 11월 14일 등기	
2019년 06월 17일 사임	2019년 06월 18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박상원 860219-*****		
2017년 03월 31일 취임	2017년 04월 12일 등기	
2018년 12월 28일 사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사내이사 채주현 710227-*****		
2018년 08월 07일 취임	2018년 08월 17일 등기	
2020년 01월 23일 사임	2020년 01월 23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강민혁 860819-*****		
2018년 12월 28일 취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2019년 04월 05일 사임	2019년 04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이동훈 720315-*****		
2018년 12월 28일 취임	2019년 01월 03일 등기	
감사 이광엽 590508-*****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3월06일 15시53분00초

- 4/18 -

종류주식의 내용

~~에이중상환전환우선주식~~

1) ~~본건 우선주의 성격~~

~~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회사”의 보통주(이하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②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이하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이하 “존속기간”)로 한다. 다만, 아래 제5)항(상환에 관한 사항)에 의한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는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

~~③ 기타 본건 우선주의 구체적인 특성 및 내용에 관하여는 주식인수계약서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다.~~

~~④ 본 우선주 발행을 위한 주식인수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주는 “회사”의 다른 모든 존속하는 주식들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 최저 연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받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이익을 “보통주”에 배당할 경우 본건 우선주가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만약,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법령 하에서 금지된다면, 현존하는 본건 우선주의 수를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인수인”은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관련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연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배당금 및 지연배상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잔여재산분배(주식인수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청산’ 또는 ‘정리’의 경우를 포함함)에 있어서 보유 중인 (i)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ii) 본건 우선주 발행가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iii)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사”의 청산 또는 정리 전에 “인수인”이 우선주의 상환을 요청하고 “회사”가 청산 또는 정리 전에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주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ii)의 금액에는 15%의 이율이 대신 적용된다. 또한, 본항에 따라 본건 우선주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후 잔여재산을 “회사”가 기타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기타 주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액인 4,200원으로 하며,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전환가액 조정후의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또한, (유·무상)증·감자, 주식의 분할, 병합,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 등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건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다라면 본건 우선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외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취득하는 “보통주”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단주의 처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본건 우선주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회사”는 “인수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자를 하거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위와 같은 증자 또는 사채 발행 시 해당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4. (i) “회사” 주식의 상장 또는 Trade Sale의 경우 (x) 공모가액 또는 “회사”의 1주당 가치의 70% 또는 (y) 해당 시점에 유효한 전환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③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9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된 본건 우선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인수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우선주식의 상환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가. 다만, 2018년 2월 1일(이하 “Target Exit Date”) 전 “인수인”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회사”에게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인수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주식인수계약서 [붙임2] ‘진술 및 보증서’에 기재된 진술 및 보증의 여하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의 누락이 있는 경우

iv) “회사”가 본 주식인수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

등기번호

033220

~~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v)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vi)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vii) “회사”의 경영/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여, “인수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vi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주식인수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ix) “인수인”을 제외한 “회사”의 여하한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그 이후 “인수인”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Target Exit Date를 경과한 이후에라도 “회사”가 Target Ex
 it Date로부터 9개월 내에 상환을 완료할 것이 확실한 경우(예를 들어, 관련기관의 상장예비
 심사 통과 확정된 경우)에는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청구를 유보하
 는 것으로 하고,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상환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방법 : “인수인”은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당해
 상환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i) 상환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ii) 본항 제①호 제1목의 가.에 따른 상환의 경우, 상환
 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사”가 본항 제2목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
 을 “인수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
 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
 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항에 따른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설립자”는 “회사”가 전항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연대하여 이행
 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인수인
 ”으로부터 상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달 내에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인
 수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설
 립자”는 (i) “회사”가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
 를 인수하거나 또는 (ii) “회사”로 하여금 즉시 청산하도록 하여, “인수인”이 본항 제①
 호 제3목에 따른 상환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이기 2016년 04월 04

일 등기

2019년 04월 24일 말소 2019년 04월 26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등기번호

033220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지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이다.~~

~~—배당~~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최초 발행기 기준 0%(액면가의 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 총액(원리금)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 ~~1.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 ~~2. “본건 상환전환우선주”가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 ~~3.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건에 대하여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주인수권~~

- ~~1.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 ~~2.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상환전환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전환권~~

- ~~1.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 ~~2. 전환조건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인간의 계약서에 전환조건외 조정(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일반상환권~~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상환전환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투자기업”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주주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6년 04월 02일 설정	2016년 04월 04일 등기
2019년 04월 24일 말소	2019년 04월 26일 등기

~~상환전환우선주식~~

~~[2018. 4. 17. 발행 주식의 내용]~~

~~“본건 상환전환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과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이지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종류주식이다.~~

등기번호

033220

~~배당~~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서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액면가의 연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 받는다. “투자기업”은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우선배당률에 미달하는 부족 배당금은 차기에 이월하여 차기의 배당금과 함께 누적 합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잔여재산분배~~

~~“본건 우선주” 주주는 “투자기업”이 청산될 때 잔여재산분배에 대하여 주금 총액과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는다.~~

~~의결권~~

~~1. “본건 우선주”는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의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의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다.~~

~~2. “본건 우선주”가 제2관에서 정한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보통주식 일(1)주당 일(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3. “본건 우선주”의 주주에게 불리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에는 전체 주주총회와 별도로 그 안전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 주주의 종류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신주인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2. “본건 우선주”의 주주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배정받는 주식은 무상증자의 경우 동종의 우선주로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 “투자기업”이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한다.~~

~~전환권~~

~~1.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2. 전환조건은 “본건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신주인수인간의 계약서에 전환조건외 조정(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일반상환권~~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기업” 및 “이해관계인”은 법적으로 상환 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하고, “투자기업”은 본건 우선주 주주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2018년 04월 17일 설정 2018년 04월 17일 등기

2019년 04월 24일 말소 2019년 04월 26일 등기

기 타 사 항

1. 발행주식의 내용

1) 본건 우선주의 성격

~~① 본건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회사”의 보통주(이하 “보통주”)에 대해 우선권이 있고, 전환 및 상환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이 있는 전환주식인 동시에 상환주식이며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②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이하 “발행일”)로부터 10년까지(이하 “존속기간”)로 한다. 다만, 아래 제5)항(상환에 관한 사항)에 의한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에~~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는 본건 우선주는 “존속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우선주로서 존속한다.~~

~~③ 기타 본건 우선주의 구체적인 특성 및 내용에 관하여는 주식인수계약서 제7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다.~~

~~④ 본 우선주 발행을 위한 주식인수계약서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주는 “회사”의 다른 모든 존속하는 주식들과 동등하게 취급된다.~~

~~2) 배당에 관한 사항~~

~~①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액면가액 기준 최저 연1%의 배당을 “보통주”에 우선하여 배당 받고,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이익을 “보통주”에 배당할 경우 본건 우선주가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다. 만약, 본건 우선주에 대하여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관련법령 하에서 금지된다면, 현존하는 본건 우선주의 수를 기준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본건 우선주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인수인”은 “발행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주가 된 것으로 본다.~~

~~③ 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관련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호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미지급 배당금에 대하여 연15%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여 위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배당금 및 지연배상금 전액이 실제로 지급되는 날까지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3)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잔여재산분배(주식인수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청산’ 또는 ‘정리’의 경우를 포함함)에 있어서 보유 중인 (i)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 (ii) 본건 우선주 발행가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잔여재산분배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 및 (iii) 미지급된 배당금을 합한 금액을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회사”의 청산 또는 정리 전에 “인수인”이 우선주의 상황을 요청하고 “회사”가 청산 또는 정리 전에 “인수인”의 요청에 따라 우선주를 상환하지 못한 경우, (ii)의 금액에는 15%의 이율이 대신 적용된다. 또한, 본항에 따라 본건 우선주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 후 잔여채산을 “회사”가 기타 주주에게 지급할 경우,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기타 주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하여 지급받을 권리를 갖는다.~~

2013년 11월 23일 변경 2013년 11월 25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년 04월 04

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4) 전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존속기간 내에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전환의 경우에 적용되는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최초 전환가액은 본건 우선주의 주당 발행가액인 4,200원으로 하며, 전환비율은 우선주 1~~

~~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다만,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전환가액 조정후의 전환비율 = 조정 전 전환가액 : 조정 후 전환가액~~

~~또한, (유·무상)증·감자, 주식의 분할, 병합, 합병 기타 이와 유사한 사건 등 전환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건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본건 우선주가 전부 “보통주”로 전환되었더라면 본건 우선주가 취득할 수 있었던 주식수를 기준으로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환비율을 조정한다.~~

~~2. 전환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취득하는 “보통주”의 수는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로 한다. 단주의 처리는 일반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한다. 본건 우선주 액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청구는 할 수 없다.~~

~~3. “회사”는 “인수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증지를 하거나 주식관련 사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하며 위와 같은 증지 또는 사채 발행 시 해당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가액이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은 그 발행가액으로 하향 조정된다.~~

~~4. (i) “회사” 주식의 상장 또는 Trade Sale의 경우 (x) 공모가액 또는 “회사”의 1주당 가치의 70% 또는 (y) 해당 시점에 유효한 전환가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여 전환비율을 조정하기로 한다.~~

~~③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349조 내지 제351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전환권을 행사로 보통주로 전환된 본건 우선주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2013년 11월 23일 변경 2013년 11월 25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업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년 04월 04~~

~~일 등기~~

~~1. 발행주식의 내용~~

~~5)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인수인”은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우선주의 상환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가. 다만, 2016년 12월 31일(이하 “Target Exit Date”) 전 “인수인”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회사”에게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인수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주식인수계약서 [붙임2] ‘진술 및 보증서’에 기재된 진술 및 보증의 여하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의 누락이 있는 경우~~

~~iv) “회사”가 본 주식인수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 v)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vi)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 vii) “회사”의 ~~경영/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여, “인수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vi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주식인수계약서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 ix) “인수인”을 ~~제외한 “회사”의 여하한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나. 그 이후 “인수인”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Target Exit Date를 경과한 이후에라도 “회사”가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 내에 상장을 완료할 것이 확실한 경우(예를 들어, 관련기관의 상장예비심사 통과 확정된 경우)에는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청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장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상환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방법 : “인수인”은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당해 상환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i) 상환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ii) 본항 제①호 제1목의 가.에 따른 상환의 경우, 상환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사”가 본항 제2목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항에 따른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설립자”는 “회사”가 ~~전항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상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달 내에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인수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설립자”는 (i) “회사”가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또는 (ii) “회사”로 하여금 즉시 청산하도록 하여, “인수인”이 본항 제①호 제3목에 따른 상환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년 11월 23일 변경 2013년 11월 25일 등기

5) 상환에 관한 사항

① “인수인”은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가 있다.~~

1. 상환청구기간 : “인수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우선주식의 상환청구를 할 권리가 있다.~~

가. 다만, 2018년 2월 1일(이하 “Target Exit Date”) 전 “인수인”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회사”에게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i)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소송 등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채반 법규를 위반하여, “인수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 또는 “설립자”가 본 계약을 상실했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iii) 주식인수계약서 [붙임2] ‘진술 및 보증서’에 기재된 진술 및 보증의 여하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중요한 사항 또는 사실의 누락이 있는 경우

iv) “회사”가 본 주식인수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v) “회사”에 상법 제517조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vi) “회사”가 사업을 중단, 포기하거나 1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된 경우

vii) “회사”의 경영/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사항이 발생하여, “인수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viii) “회사” 또는 “설립자”가 주식인수계약상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ix) “인수인”을 제외한 “회사”의 여하한 다른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그 이후 “인수인”은 존속기간 만료시까지 언제든지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Target Exit Date를 경과한 이후에라도 “회사”가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 내에 상환을 완료할 것이 확실한 경우(예를 들어, 관련기관의 상장예비심사 통과 확정된 경우)에는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청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Target Exit Date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환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상환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방법 : “인수인”은 “회사”에 서면으로 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당해 상환청구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상환가액 : (i) 상환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ii) 본항 제①호 제1목의 가.에 따른 상환의 경우, 상환가액은 (A) 상환될 본건 우선주의 발행가액의 총액과 (B)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금액 및 (C) 미지급된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회사”가 본항 제2목에서 정한 상환하여야 할 날에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미지급 상환가액에 대하여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는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할 수 있도록 매회계연도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시 상환주식에 대한 상환준비금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본건 우선주의 상환청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항에 따른 연복리 15%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설립자”는 “회사”가 전항에 의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한다.

③ “회사”가 충분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인수인

등기번호	033220
------	--------

”으로부터 상환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달 내에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인수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시점에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하는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설립자”는 (i) “회사”가 본건 우선주를 상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새롭게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거나 또는 (ii) “회사”로 하여금 즉시 청산하도록 하여, “인수인”이 본항 제①호 제3목에 따른 상환가액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5년 03월 27일 변경	2015년 04월 14일 등기
2014년 11월 21일 상법등기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른 말소	2016년 04월 04일 등기
1. 전환주식의 전환	
상환전환우선주식 579,711주를 보통주식 579,711주로 전환	
2019년 04월 18일 변경	2019년 04월 22일 등기
1. 전환주식의 전환	
에이중상환전환우선주식 952,340주를 보통주식 952,340주로 전환	
상환전환우선주식 1,184,573주를 보통주식 1,184,573주로 전환	
2019년 04월 24일 변경	2019년 04월 26일 등기
1.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사국제금융센터)	
2019년 04월 24일 설치	2019년 04월 26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75,000주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3년 11월 06일 설정 2013년 11월 07일 등기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8년 09월 17일 변경 2018년 10월 01일 등기 >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 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합니다.

등기번호

033220

~~4.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 직원~~

~~< 2019년 01월 16일 변경 2019년 01월 17일 등기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2) 정관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19년 03월 29일 변경 2019년 04월 09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한다.~~

~~< 2013년 11월 06일 설정 2013년 11월 07일 등기 >~~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한다.~~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통주식의 자기주식으로 교부한다.~~

~~< 2019년 01월 16일 변경 2019년 01월 17일 등기 >~~

~~1)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2019년 03월 29일 변경 2019년 04월 09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75,000주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앞에 언급한 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013년 11월 06일 설정 2013년 11월 07일 등기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40조의2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집행임원,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앞에 언급한 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2018년 09월 17일 변경 2018년 10월 01일 등기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회사의 임, 직원~~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대학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5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4) 회사가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 직원~~

~~2.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2)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2019년 01월 16일 변경 2019년 01월 17일 등기 >~~

~~1) 정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3에 따른 벤처기업의 임직원, 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대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2) 정관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11조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2019년 03월 29일 변경 2019년 04월 09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3년 11월 06일 설정 2013년 11월 07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부터 그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재임 또는 재직 중이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 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정관의 신주의 배당기산일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년 09월 17일 변경 2018년 10월 01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 결의일부터 그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재임 또는 재직 중이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그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9년 01월 16일 변경 2019년 01월 17일 등기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정관 제11조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7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 제11조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019년 03월 29일 변경 2019년 04월 09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3년 11월 06일 설정 2013년 11월 07일 등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기번호	033220
------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9년 01월 16일 변경 2019년 01월 17일 등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9년 03월 29일 변경 2019년 04월 09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7년 06월 01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2013년 01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18-31 동천빌딩 6층으로부터 본점이전 2013년 01월 17일 등기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